

가스관계법에 따라 굴착공사자는 굴착공사 개시 전
굴착공사 계획을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

관계법령

-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 [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]
 -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의3 [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]
 -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및사업법 제49조의3 [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]
- ☞ 위반시 벌칙 : 굴착공사 계획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굴착공사 계획 신고대상

도시가스사업, 액화석유가스 배관망사업이 허가된 지역 및 고압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역 등에서 구멍뚫기, 말뚝박기, 터파기, 건축물 신축 및 철거 등의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

☞ 신고제외대상 :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지 내에서 행하는 수작업에 의한 굴착공사, 농지경작을 위한 깊이 45cm 미만의 굴착공사 등

신고내용, 신고기한 및 신고방법

- **신고내용** : 굴착공사 발주자명, 굴착공사 회사명 및 공사 담당자 인적사항, 굴착공사 종류·위치 및 공사 예정일자, 사용자 부지 내 굴착공사시 가스사용자 인적사항 및 시설명
- **신고기한** : 공사 시행 24시간 전에 신고(단, 주말·공휴일은 요청시간에서 미포함)
 - ☞ 예) 월요일 공사 건은 전주 금요일까지 신고, 토·일요일 공사 건은 목요일까지 신고
- **신고방법** : 전화(콜센터 1644-0001), 인터넷(www.eocs.or.kr), 굴착공사정보지원 앱 등

굴착공사 계획 신고 처리절차

1 굴착공사 계획 신고



2 접수번호 발급



3 가스배관 및 굴착현장 표시



4 굴착공사 개시 통보



5 굴착공사 시행

